

부천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233
의결 년월일	93. 12. 24 (제25회)

제출년월일 : 1993. 12.

제 출 자 : 조례정비특별위원회

□ 개정사유

- 현행 부천시고문변호사조례에 의하면 시장은 2인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하여 법률자문으로 운영하고 있음
- 시의회도 시장과 합의하여 1인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추천토록 함으로써 의회운영에 따른 법률자문으로 운영하고자 함.

□ 주요골자

- 현행 부천시 고문변호사를 2인 이내로 하고, 2분의 1은 시의회가 추천토록 함.
- 현행 조례는 고문변호사 수당을 예산범위 내에서 월 100,000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어,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수당액 변경 시 매년 조례가 개정되어야 하는 비능률을 개정하고자 함.
- 솟가없는 소송기준액이 5,000,100원에서 10,000,100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소송착수금을 200,000원에서 330,000원으로 개정하고자 함.

부천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

부천시고문변호사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시장은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2인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. 단, 고문변호사 중 2분의 1은 시의회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여야 한다.

제3조 중 “시장”을 “시장(시산하 기관장을 포함한다) 및 시의회의장”으로 한다.

제4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② 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당해 년도 예산편성지침에서 정한 금액의 고문변호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5조 중 “시장”을 “시장(시산하 기관장을 포함한다)및 시의회의장”으로 한다.

(별표1) 소송비용 지급기준 중 민사소송 착수금 란의 “200,000원”을 “330,000원”으로 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위촉 고문변호사에 대한 경과조치) 이 조례시행 당시 이미 위촉된 고문변호사는 이 조례에 의한 시장의 추천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보며 위촉일 및 위촉기간 만료일은 종전 조례에 의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	행	개	정
제2조(위촉 및 해촉) ① 시장은 개업중인 변호사중에서 2인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.	제2조(위촉 및 해촉) ① 단, 고문변호사중 2분의 1은 시의회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여야 한다.		
제3조(고문사항)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<u>시장</u> 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.	제3조(고문사항) <u>시장(시산하기관장을 포함한다)</u> 및 <u>시의회의장</u>		
제4조(소송비용등) ① (생략) ② 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<u>예산의 범위내에서 월100,000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</u>	제4조(소송비용) ① (현행과 같음) ② <u>당해년도 예산편성 지침에서 정한 금액의 고문변호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</u>		
제5조(사건실적부비치) <u>시장</u> 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을 의뢰할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사건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.	제5조(사건실적부비치) <u>시장(시산하기관장을 포함한다) 및 시의회의장</u>		

현				개					
(별표1)				(별표1)					
소송비용 지급기준				소송비용 지급기준					
구분 소송별		지 급 기 준			구분 소송별		지 급 기 준		
		내 용	착 수 금	승 소 사 례 금			내 용	착 수 금	승 소 사 례 금
민 사 소 송	2. 본안사건· 소송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	200,000원 이내	(생략)		민 사 소 송	2. (헌행과 간음)	330,000원 이내	(헌행과 간음)	

부천시가로명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234
의결 년월일	93. 12. 24 (제25회)

제출년월일 : 1993. 12.

제 출 자 : 조례장비특별위원회

☐ 제안사유

-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시정자문위원회 제도가 폐지된 지급까지 정리되지 않고 있는 사항을 지방화시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동 조례 제3조 제2항 지방의회 구성 전까지 시정자문위원회에서 의결토록 한 잡정 규정 사항을 삭제하는 것임.

☐ 주요골자

- 지방의회 구성 전까지 가로명의 제정·변경 시 잠정적으로 시정자문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된 사항을 삭제

☐ 법적근거

- 부천시시정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

부천시가로명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부천시가로명에관한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(가로명 선정과 고시) 제2항 중 “시 지방의회” 다음에 “(지방의회 구성 전까지 시정자문위원회)”를 삭제한다.